

제18703호 2016. 2. 22.(월)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호(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고시 일부개정)	6
○법무부고시제2016-98호(국적상실)	16
○국방부고시제2016-80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4호(유해간행물)	20
○환경부고시제2016-48호(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조서,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7호(고속국도 제40호선<음성~충주간> 건설공사의 지형도면)	3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호(고속국도 제40호선<충주~제천간> 건설공사의 지형도면)	3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9호(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 세목조서)	3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0호(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조서)	4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호(도로구역 결정)	46
○관세청고시제2016-11호(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48
○문화재청고시제2016-9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58
○산림청고시제2016-19호(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6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1호(국적상실)	67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국적상실)	7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국적상실)	7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3호(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완료)	7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호(하천수사용 허가)	7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호(하천수사용 허가)	7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호(하천수사용 허가)	7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호(하천수사용 허가)	7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호(하천수사용 허가)	7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5호(하천수사용 허가)	7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6호(하천수사용 허가)	7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호(하천수사용 허가)	7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8호(하천수사용 허가)	78

(이면 계속)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9호(하천수사용 허가)	7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0호(하천수사용 허가)	7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1호(하천수사용 허가)	7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2호(하천수사용 허가)	8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3호(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8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하천수사용 허가)	8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7호(하천수사용 허가)	8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8호(하천수사용허가 실시계획인가)	8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무선국<항공국> 시설자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	82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무선국 허가)	83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무선국 변경허가)	83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6호(공시송달)	8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5호(전자금융업 등록)	8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외교부공고제2016-20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88
○고용노동부공고제2016-61호(안전인증 취소)	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1호(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준공)	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97호(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00호(신기술지정 신청)	93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4호(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9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16-9호(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95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6-19호(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95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8호(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9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0호(시정권고 재결)	9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1호(시정권고 재결)	9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4호(공시송달)	99

【법 원】

○판결(광주지방법원)	101
-------------------	-----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445호(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446호(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3호(중앙당 등록)	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4호(중앙당 등록)	1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5호(중앙당 등록)	1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7호(중앙당 등록취소)	110

【지방자치단체】

○(서울)용산구공고제2016-131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111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108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1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0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한국콘젝트시스템, ② 대보건설(주),
③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④ (주)이도

나. 전화번호 : ① 02-892-5451, ② 02-3012-9283, ③ 02-6211-7681, ④ 02-3016-9197

2. 명칭 : 표면 처리 및 방수시트를 이용한 복합식 방수처리공법 및 이에 의하여 시공된 방수구조와 조성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아크릴액상수지 알루미늄네이트, 규사, 시멘트를 혼합하여 방수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에 붓이나 로울러로 도포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침투 되도록 함으로써 콘크리트 표면을 강화시킴과 아울러 하지와의 접착력을 높이도록 하는 1차 도포층 시공단계와, 에폭시 수지, 폴리아미드, 3급 아민, MEK(Methyl Ethyl Ketone)을 혼합하여서 된 조성물을 1차 도포 층 양생 후 붓이나 로울러로 2차 도포하여 방수시트와의 우수한 접착력을 확보하는 2차 시공단계와, 경탄, 폴리부덴, 페타이어를 활용한 부틸고무 등을 혼합하고 이를 로울러로 압착하여 연결형 시트를 성형하고 하부에는 이형필름 상부는 고강도 합성필름(보호층대체)을 접착시켜 보호층과 방수층이 일체화된 시트를 2차 조성층 위에 이형지를 벗겨가면서 부착하는 방수공법으로 건축구조물의 지하주차장 옥상에 적용되는 비노출 방수 공법이며 동절기시공이 가능하고 별도의 보호층이 필요 없는 방수공법이다

<범위>

1차방수대상 구조물에 표면처리하고 2차침투식 2액형 프라이머도포하고 3차, 페타이어활용한 연결형 자착식부틸 고무로 방수층을 성형 한 후 고강도 합성필름을 방수 보호 층으로 사용하여 보호 층과 방수층을 일체화 시킨 복합식 방수시트를 부착하는 방수 공법으로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상부, 옥상의비노출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4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 작업장 시정명령
-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 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유진농장	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길 **-**	가축사육업 (4520000-033-2013-****)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29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견제출 기한으로 15일을 산정부여)
- 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화번호 : 032) 722-8226
 - 전자우편 주소 : vet98jetli@korea.kr
 - F A X : 032) 891-1360
 - 담 당 자 : 이재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우리지역본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본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32-722-8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